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2005. 6. 16. 제정

2015. 2. 6. 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대상자) 직원희망퇴직의 대상자는 본교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의료원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 2 조의 2 (근속연수)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5.2.6.)
- 제 3 조 (직원희망퇴직의 제한) ① 직원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원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원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장은 직원 수급계획,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4 조 (직원희망퇴직수당 지급액) 직원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원희망퇴직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퇴직당시 봉급의 24월분을 지급한다. 여기에서 “봉급”은 이화여자대학교 보수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의 잔여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봉급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제 5 조 (직원희망퇴직의 실시회수 및 시기) 직원희망퇴직은 매학기 학사일정 종료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회수와 시기는 본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6.)
- 제 6 조 (직원희망퇴직 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지) ① 총장은 직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직원희망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 7 조 (사직원 제출) 제6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직원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원희망퇴직신청서를 사직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8 조 (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급여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제 9 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5. 6. 16.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